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2928 판결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29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4 선고 2021가단740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육동

변론종결 2022. 10. 28.

판결선고 2023. 2.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4. 선고 2021가단740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